

제 1192호
1985.10.7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 모 언
 편집인 : 공 보 관 이 광 우
 전 화 : 731-6111-3
 인 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 전 화 : 735-3237

계	보도국장	공보국장	공보관	공보관

시 보

차 례

◎ 고 시

제 672 호 : 주택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사업시행인가	2
제 673 호 : 도심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	2
제 674 호 : 왜지고기연동가적고시	6
제 675 호 : 재개발사업인가신청기간지정고시	6
제 676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6
제 677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7
제 678 호 : 관악산자연공원내매점 및 편의시설설치허가	7

◎ 사 령

공									
람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72 호

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

- 1. 도시재개발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동대문구청 주택과와 청량리 제 2 구역 재개발조합에 비치한다.

1985. 10. 7.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주택개량재개발 청량리 제 2 구역 재개발사업
- 나. 조합의 명칭 : 주택개량재개발 청량리 제 2 구역 재개발조합
- 다. 시행구역 및 면적
 - 1) 시행구역 : 동대문구 청량리동 234 번지 일대
 - 2) 면 적 : 13,821 평방미터
- 라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동대문구 청량리동 234-185
- 마. 시행기간 : 85.9-87.7.30.
- 바. 시행인가일 : 85.9. .

사. 시행자 : 주택개량재개발 청량리 제 2 구역 재개발조합

아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, 건물조서 : 별첨 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73 호

도심재개발사업계획결정및지적승인가시

- 1. 건설부 고시제 143 호 (84.4.28) 로 재개발구역 지정된 북창구역의 재개발사업계획 및 지적승인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5 조, 제 8 조, 동법시행령 제 58 조 및 도시계획법 제 13 조, 동법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- 2.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10. 7.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(별첨조서참조)
- 나. 관제도면 : 별첨 (생략)

북창구역재개발사업계획결정

가. 재개발사업계획 결정조서

1) 구역면적 변경결정 (면적 정정) 조서

(단위 : ㎡)

구분	위치	면적	비고
기정	중구 북창동 일대	66,850	구역의 변경이 아닌 단순한 면적의 정정임.
변경	"	67,064	

2) 지구계획 및 건축계획 결정조서

지구별	시행면적 (㎡)	대지면적 (㎡)	건축계획				비고
			건폐율	용적율	층수	주용도	
1	4,419.5	3,133.1	30-40 %	593 %	20	업무(지하일부 판매시설)	존치
2	913.7	783.6	34-45	318	9	근린생활	
3	819.5	819.5	63.6	736	13	업무	
4	2,012.6	1,413.7	33-40	394	12	근린생활	
5	261.1	261.1	90.4	1,187	12	업무	
6	347.1	347.1					
7	276.0	276.0	84.1	921	10	업무	
8	1,569.1	1,178.0	35-40	389	10	근린생활	
9	1,465.1	1,214.1	35-40	349	10	"	
10	699.2	695.4	71.3	460	6	주차	
11	871.4	707.3	40-45	340	8	근린생활	
12	897.9	777.9	63.7	545	10	업무	
13	559.2	559.2	99.6	1,556	16	"	
14	6,977.4	5,797.9	25-40	510	20	숙박	
15	793.4	727.9	47.1	541	9	업무	
16	1,425.1	1,096.9	40-45	348	8	근린생활	
17	1,021.7	767.7	40-45	352	8	"	
18	901.9	695.9	40-45	285	7	"	
19	886.4	725.6	40-45	234	7	"	
20	764.2	572.4	40-45	350	8	숙박	
21	866.2	668.9	40-45	402	9	근린생활	
22	960.5	699.2	40-45	387	9	"	

지구별	시행면적 (㎡)	대지면적 (㎡)	건축계획				비고
			건폐율	용적율	층수	주용도	
23	320.7	676.6	40-45	319	8	근린생활	존치
24	1,018.5	782.9	40-45	319	8	"	
25	824.8	651.8	40-45	281	7	"	
26	642.8	464.9	38-45	292	7	"	
27	1,621.2	1,219.7	35-40	397	11	"	
28	3,513.4	2,585.4	31-40	504	16	업무 (지하일부판매)	
29	2,119.6	1,541.1	33-40	492	15	"	
30	362.1	362.1	95	1,265	13	업무	
31	373.5	373.5	93.9	1,710	17	"	
32	1,006.3	717.5	38-45	347	9	근린생활	
33	3,292.1	2,308.1	35-40	640	18	업무 (지하일부판매)	일부 존치
34	6,251.4	4,643.5	41.8	620	20	"	
35	4,932.9	3,839.7	29-40	501	17	"	
36	2,987.0	2,206.8	35-40	615	17	"	

(주) 지구별 공공용지 부담면적 (시행면적에서 대지면적을 뺀 면적)은 건축계획상 용적율에 비례하여 계획한 것임.

3) 공공공지 결정조서 (단위: ㎡)

위치	면적	비고
중구 남대문로 4 가 17-4 번지 일대	103	

4) 도로결정조서

노선번호	폭원 (m)	연장 (m)	기점	종점
중로 1류 1호선	20	38.0	태평로 2 가 69-2	북창동 19-1
중로 2류 1호선	15	287.0	남대문로 3 가 98	" 18-9
중로 3류 1호선	12	298.0	남대문로 4 가 71-5	" 38-4
중로 3류 2호선	12	73.0	태평로 2 가 69-13	" 20-2

노 선 번 호	폭 원 (m)	연 장 (m)	기 점	종 점
소로 1류 1 호선	10	116.0	북창동 93-3	북창동 120-3
소로 1류 2 호선	10	75.0	" 39-32	소공동 112-2
소로 2류 1 호선	8	59.9	남대문로 4 가 17-35	남대문로 4 가 17-19
소로 2류 2 호선	8	164.0	" 3 가 92-1	북창동 85-2
소로 2류 3 호선	8	52.0	북창동 93-38	" 94-39
소로 3류 1 호선	6	93.0	" 14-5	" 12-5
소로 3류 2 호선	6	109.0	" 25	소공동 112-2
소로 3류 3 호선	6	41.0	소공동 112-2	" 112-4
소로 3류 4 호선	6	109.0	북창동 94-47	북창동 94-17
소로 3류 5 호선	6	26.0	" 24-2	" 94-10
소로 3류 6 호선	6	26.0	" 99-1	" 95
소로 3류 7 호선	6	126.0	남대문로 4 가 17-3	남대문로 4 가 17-22

5) 공용의 청사결정조서

(단위:㎡)

명 칭	위 치	면 적	비 고
동 사 무 소	중구북창동 61 번지일대	202	
파 출 소	중구북창동 12-3 번지일대	189	
소 방 파 출 소	중구북창동 93-65 번지일대	554	
계		945	

6) 공원결정조서

(단위:㎡)

명 칭	위 치	면 적	비 고
북창제 1 공원	중구북창동 104 번지일대	1,001	
북창제 2 공원	" 71-4 "	374	
북창제 3 공원	" 97 "	203	
북창제 4 공원	" 93-32 "	173	
북창제 5 공원	" 대경로 2 가 69-3 "	158	
북창제 6 공원	" 남대문로 4 가 17-19 "	92	
계		2,001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74 호

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

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규정(농수산부 고시 제 85-47 호 85.8.22)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 10. 7.

서울특별시장

1. 돼지고기 연동가격
돼지고기(정육 500그램당) 1,850 원
2. 시행일 : 1985.10.10 부터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75 호

재개발사업인가신청기간지정고시

1. 건설부 고시제 143 호(84.4.28)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시고시제 673 호(85.10.7)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된 북창구역의 재개발사업인가 신청기간을 도시재개발법 제 1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한다.

1985. 10. 7.

서울특별시장

가.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 지정내역

구역명	면적	지구수	인가신청기간
북창구역	67,064 ㎡	36 개 지구	85.10.7 - 87.6.30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76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
2. 사업주체 : 강동, 성내 112-65
화랑주택 조영회

3. 사업시행 위치, 면적 및 규모

가. 위치 : 도봉상계 616-2 외 9필지

나. 면적 : 5,795.36 ㎡

다. 규모

연립, 1층, 3동, 11가구

단독, 1층, 2동, 1

상가, 1층, 1동,

4. 사업시행기간 : 85.10 - 85.12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77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 10. 7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
- 2. 사업주체 : 강남반포 365-8
 해평공영 유 석 여
- 3. 사업시행 위치, 면적 및 규모
가. 위치 : 도봉우이 162-1 의 6 필지
나. 면적 : 2,097.0 ㎡
다. 규모 : 연립, 3층, 1동 27 가구
- 4. 사업시행기간 : 85.10-86.9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78 호

관악산자연공원내매점및편익시설설치허가

- 1. 서울특별시 고시제 698(83.12.26) 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되고 서울특별시 공고제 548(85.9.19) 호로 공고공람된 관악산 자연공원 서울대 입구 및 신림계곡지구 매점 및 편익시설 설치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 6 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2 조 및 도

시계획법 제 24 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- 2.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

1985. 10. 7.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관악구 신림동 210와3 필지
(상수도시설 : (시점)신림동 155-1 (중점)신림동산52
- 나. 사업규모 : 매점 1층 1동 150 ㎡, 화장실 1층 3동 198 ㎡,
상수도시설 : 80 % = 약 1 km
기타 부대시설 1식
- 다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공원시설설치), 관악산 자연공원매점 및 편익시설설치 공사
- 라. 세부내역 : 별첨
- 마. 사업시행자 : 마포구 아현동 663-13
 심 영 택
- 바.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
 - [착공일 : 85.10.
 - [준공일 : 86.10.
- 사. 사용할 토지명세 (생략)
- 아. 토지소유자 : 서울특별시 국유지
자. 위치도 및 평면도 : 별첨
(도면 생략)

사 명

◎ 1985년 10월 7일자

명제 375 호

성 명	발 령 부 서	현 부 서	직 급
신종섭	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	투자관리담당관	지방행정주사

명제 376 호

성 명	발 령 부 서	현 부 서	직 급
윤갑섭	상공과	농축과	지방행정주사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장우규	해외훈련과전을 명함. 가. 훈련분야: 환경과학기술 나. 파견기간: '85.10.23 ~ '86.9.22 (11개월) 다. 파견국: 화란 (I.G.E in Delft)	동작구원경과	지방화공기사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정철권	해외훈련과전을 명함. 가. 훈련분야: 종합도시교통계획 나. 파견기간: '85.10.10 ~ 12.7 (약 2개월) 다. 파견국: 일본 (Ministry of Contra- ction) 라. 훈련비용: 불통보 자금	서대문구 도시정비과	지방토목기과

서울특별시